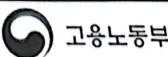
■ 실업인정 및 채취업지원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2. 12.>

(창구번호 : 번)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		
 본 질문지는 수급자가 초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 및 채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나 출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 명 이 첫5 생년월일 1967.08	23	
질 문 항 목	RE-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시 고용센터 담당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나요? □ 예 → 2번부터 6번까지 작성 □ 아니오 → 4번부터 6번까지 작성 □ '예'를 선택하실 경우 "집중 취업지원 대상자"로 분류되어 매 실업인정 유선 및 대면상담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가 지원될 것이므로 실제 도움이 필요하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마다 신 분만	
.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고 싶으신가요? □ 센터 방문 □ 유선 상담		
.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를 체크해주세요(복수 선택 가능) □ 단순 구인정보제공 □ 적합 구인업체 연결 등 알선 □ 진로지도(취업특강, 심리검사 등) □ 심층상담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 기타() 4.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자영업(프리랜서, 보험설계사 등 법인·개인 사업포함)을 계획하고 있나요? □ 예(업종: , 개시예정일: , 자영업개시를 위한 준비활동:)	소득자	
○ 아니오 5.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외취업을 계획하고 있나요? □ 예(해외체류 중 재취업활동:) 아니오		
* 자영업계획 혹은 해외취업이 있다면 담당 창구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	니다.	
6. 고용복지연계 서비스를 희망하면 체크해 주세요		
□ 복지서비스(의료, 교육 등) □ 서민금융(소액대출, 신용회복 등)		
□ 여성인력개발센터(취업 및 훈련 상담 등) □ 중장년인력개발센터(중장년 층 취업상담 등)		



※ 해당 수강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를 내려받아 자율적으로 학습하신 이후에, 1차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는 때에 제출하는 수강확인서입니다. 확인란에는 V표시 O표시 등을 통해 우축에 작성된 내용을 읽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는 성명, 생년월일, 자체수강일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학	인란
1	1

본인은 교육자료의 내용에 따라 구직급여가 본인의 실업인정일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는 점을 인지하였음



또한, 마지막 이직 사업장과 관계가 없는 사업장에 소정급여일을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 사업을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

* 구체적인 지급여부 판단은 신청 이후에 결정되는 점도 인지하였음



한편, 구직급여는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전제로 실업상태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재취업활동 사실을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제출하거나, 취업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는 때에는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되고,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을 반환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



마지막으로, 실업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재취업활동 증빙자료와 인터넷 및 모바일 실업인정 신청방법을 숙지하였음

> 성명: 이 천숙 (서명 환영) 생년월일: 1960, 8, 23 수강일: 2012 、 3, 26